◉국토교통부령 제798호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24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 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, “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5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

제66조의3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·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83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.

별표 22의2 비고 제5호 중 “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”을 “강의·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30호서식]

(앞쪽)

제 호

건설기계 ☐ **대여업** ☐ **정비업** ☐ **매매업** ☐ **해체재활용업** **등록증**

1. 상호(명칭)

2. 성명(대표자) (생년월일:)

3. 사업자등록번호

4. 등록종별

5.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

사 무 실 : 면적 ㎡

주기장 또는 정비장: 면적 ㎡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(150g/㎡)]

(뒤쪽)

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

구 분		성 명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건설기계대수	건설기계등록번호
대 표 자					
연명등록자	1				
	2				
	3				
	4				
	5				
	6				
	7				
	8				
	9				
	10				
	11				
계					

[별지 제37호서식]

(앞쪽)

제 호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
성명
생년월일
주소
국적
발급일자 . . .
적성검사유효기간 . . . ~ . . .
소지면허

위의 사람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사 진

(3.5cm×4.5cm)

86㎜×54㎜[PVC(비닐)980.4g/㎡]

(뒤쪽)

연 월 일	기 재 사 항 변 경	확 인 인

* 적성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(300만원 이하)가 부과되고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86㎜×54㎜[PVC(비닐)980.4g/㎡]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의 집단 전파 우려가 큰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원활히 시행되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감염병·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, 교육 방법에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을 추가하며,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및 건설기계사업 양도·양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

◉해양수산부령 제451호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 인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(이하 “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”라 한다)의 기재사항, 작성방법 및 검사기준은 별표 20의4와 같다.